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59956 손해배상(기)

원 고 1. 강천수

2. 조은숙

원고 1, 2의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201동 1703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3. 김기수

4. 정하순

원고 3, 4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 506동

304호(동천동, 동천마을동문굿모닝힐5차

아파트)

5. 김성미

6. 변영식

원고 5, 6의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길 14, 201동 901호

(합정동,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7. 김은영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218동 601호(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

운아파트)

8. 김하나

9. 차기용

10. 차승혁

원고 8 내지 10의 주소 대전 서구 가수원로 83, 102동 304호

(모아드림아파트)

원고 1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차기용, 모

김하나

11. 김학인

12. 이수미

13. 김지훈

14. 김도훈

원고 11 내지 14의 주소 경기 부천시 계남로 72, 2234동 603

호(상동, 진달래마을)

15. 노승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81, 1514동 302호(선부동, 주

공아파트)

16. 류근식

17. 박향숙

원고 16, 17의 주소 전남 목포시 미향로 206, 101동 102호

(옥암동, 제일아파트)

18. 박두원

19. 장세진

20. 박지성

21. 박가운

원고 18 내지 21의 주소 서울 관악구 구암길 95, 401호(봉천동, 대동황실아파트)

원고 20, 21은 미성년자이므로 각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두원, 모 장세진

22. 박상국

경기 광명시 안현로 36, 401동 305호(하안동, 하안4단지고층주공아파트)

23. 서정란

24. 정재권

25. 정아영

원고 23 내지 25의 주소 서울 도봉구 노해로66길 21, 111동 501호(장동, 삼성아파트)

26. 서정인

27. 강영미

28. 서주혜

29. 서지혜

원고 26 내지 29의 주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401, 1405호 (신정동, 대림아크로빌)

30. 성국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10, 104동 1001호(마북동, 교동마을 마북 이-편한세상)

31. 신말숙

32. 정병석

원고 31, 32의 주소 부산 수영구 민락로6번길 49, 2동 401호
(민락동, 이진빌라)

33. 안상준

34. 김보람

35. 안진유

원고 33 내지 35의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411-1503(정자동, 느티마을)

36. 유금자

경기 부천시 중동로 108, 118-1503(중동, 팰리스카운티)

37. 유정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76길 31, 103동 404호(광장동, 광나루현대
아파트)

38. 이경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월암길 125 폴링인블루펜션

39. 이은영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 106동 502호(동춘동,롯데아

파트)

40. 이점행

41. 주은미

42. 이해원

원고 40 내지 42의 주소 서울 강서구 강서로47길 158, 208동
1306호(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2
단지아파트)

43. 이정승

44. 이주희

원고 43, 44의 주소 서울 강북구 삼양로27길 19, 218동 1303
호(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리아파트)

45. 이지혜

46. 전병규

원고 45, 46의 주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606, 205동 707호
(제이파크 아파트)

47. 정영숙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405동 801호(답십리동, 래미안위
브)

48. 채수인

49. 장세원

50. 채민주

51. 채영인

원고 48 내지 51의 주소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 101동
1103호(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
지오)

원고 50, 51은 미성년자이므로 각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채수
인, 모 장세원

52. 최경환

53. 이점향

54. 최희재

원고 52 내지 54의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13길 48-3,
2동 201호 (방배동, 자이빌)

55. 최혜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113동 2403호(잠실동, 잠실엘스)

56. 홍종희

57. 최경희

원고 56, 57의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35, 202-2002
(레미안대치펠리스)

58. 황영상

59. 장희연

60. 황지영

61. 황지혜

원고 58 내지 61의 주소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22가길 30, 2층

62. 김은경

63. 양수현

원고 62, 63의 주소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71길 11, 101동
505호(면목동, 용마2차한신아파트)

64. 양성기

서울 구로구 부일로19길 69, 4동 402호(궁동, 청와빌리지)

65. 채병석

66. 이인선

원고 65, 66의 주소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80, 115
동 2103호(덕소두산위브아파트)

67. 강병구

68. 이인영

69. 강나연

원고 67 내지 69의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수천1로 59,
1901동 2002호(삼송동, 삼송스타클
래스)

70. 유민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40번길 10, 402호(구월동, 경창빌라)

71. 김재자

72. 정누리

73. 정재민

원고 71 내지 73의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60길 20, 101동
1205호(상도동, 상도대림아파트)

74. 김유훈

대구 남구 이천로 26(봉덕동)

75. 신선영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92, 206동 605호(우만
동, 우만주공2단지아파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장세호, 형장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범

피 고

대진침대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용정리1길 7 (판정리, 대진침대천안공장)

대표이사 신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06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피고가 제조한 침대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각 매트리스'라 한다)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대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1)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2018. 5. 3.경 이루어지자, 대한민국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8. 5. 10.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 제품

해당 매트리스는 겔커버(원단-솜-부직포) 안에 있는 속커버(원단-솜-부직포) 원단 안쪽에 음이온파우더가 도포된 것으로,

업체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 및 방사능농도 분석결과(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이 1:10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모나자이트¹⁾의 고유 특성임)를 토대로,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하였다.

2.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외부피폭선량 평가

□ 안전재단(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매트리스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속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여,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 안전재단은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밀리시버트)이며,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mSv로 평가하였다.

○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 범위 내였다.

3. 라돈측정 및 내부피폭선량 평가

□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매트리스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범위 내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 침대가 얼굴을 포함하여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할 때,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 및 토륨의 내부피폭위험성이 존재할 수도 있어, 매트리스(완제품)의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는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cm(사용자가 엎드려 호흡할 경우), 10cm(사용자가 바로 누워 호흡할 경우), 50cm(사용자가 앉아 호흡할 경우) 지점에서 라돈측정기(RAD7)로 라돈·토륨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UN산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제시한 라돈 농도에 따른 내부피폭선량 환산방법을 활용하였고, 매트리스가 직접적 요인으로 기여한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배경준위를 제외하였다.

측정 위치	이 격 거 리 (cm)	농도 측정(A) (Bq/m ³)		배경 준위(B) (Bq/m ³)		매트리스 기여분 (A-B)					
		라돈 Rn ²²²	토륨 Rn ²²⁰	라돈 Rn ²²²	토륨 Rn ²²⁰	라돈 Rn ²²²			토륨 Rn ²²⁰		
						농도 (Bq/m ³)	선량1 (mSv/년)	선량2 (mSv/년)	농도 (Bq/m ³)	선량1 (mSv/년)	선량2 (mSv/년)
매트 리스 표면 위	2	24.2	91.6	15.0	13.5	9.20	0.16	0.39	78.10	0.34	0.82
	10	14.0	29.9	8.83	13.8	5.17	0.09	0.22	16.10	0.07	0.17
	50	16.0	3.3	17.7	13.8	-	-	-	-	-	-

선량1 : 하루에 10시간을 침대의 해당 거리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선량2 : 하루에 24시간을 침대의 해당 거리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 위 결과 중, 가장 높은 농도 값은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측정한 값으로, 라돈

(0.16mSv)과 토론(0.34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Sv로 평가되었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실내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mSv를 권고함. 라돈은 기체 형태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제품별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음.

○ 또한 매트리스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라돈·토론의 농도 값과 내부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라돈 43.8%, 토론 79.4% 감소율 보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트리스 상단 50cm 지점에서는 라돈과 토론의 영향이 미미하여 실내 공기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붙임 1>

□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동위원소는 수십 종이며 이 중 관련 주요 핵종은 Rn-222와 Rn-220이 있음

○ Rn-222는 U-238이 붕괴되어 생성, 반감기 3.8일이며 통상 라돈을 지칭할 때 Rn-222를 의미

○ Rn-220은 Th-232가 붕괴되어 생성, 반감기는 55.6초로 매우 짧으며 토륨에서 유래되어 토론이라 지칭

※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Rn-220의 짧은 반감기 때문에 실내 공기 환경에서 Rn-220에 의한 피폭이 낮아 주로 Rn-222에 대한 방호를 중점으로 설명

- 토론이 라돈에 비해 피폭량이 적고, 토론 방호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페인트 도포 등으로 차폐 가능)에 현재 토론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음

□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흡연 다음으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음

○ 라돈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 연구는 외국에서 주로 직업적으로 노출이 많은 집단(지하 광부)에 대한 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내의 경우,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2015년 서울지하철 근로자)가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라돈이 주요 노출요인이 되어 폐암 발생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음

○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라돈에 노출되었을 때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15. 피고가 2010년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1) Monazite/토륨광 : 토륨, 우라늄 등을 함유한 광물

매트리스 26종 중 24종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 부분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종의 매트리스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되는바, 위 제품들에 대하여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차 측정·분석·평가 결과

□ 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mSv(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피고 제품은 총 7종이다.

연번	모델명	측정 농도(Bq/m ³) ※ 배경준위 제외		피폭선량(mSv/년)		
		라돈 Rn ²²²	토론 Rn ²²⁰	라돈 Rn ²²²	토론 Rn ²²⁰	라돈+토론
1	그린헬스2	35.13	1364.45	0.39	8.96	9.35
2	네오그린헬스	61.54	1218.18	0.69	8.00	8.69
3	뉴웨스턴슬리퍼	68.08	1041.01	0.76	6.84	7.60
4	모젤	-	677.69	-	4.45	4.45
5	벨라루체	12.18	220.32	0.14	1.45	1.59
6	웨스턴슬리퍼	1.08	294.52	0.01	1.93	1.94
7	네오그린슬리퍼	14.18	308.16	0.16	2.02	2.18

※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

□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라돈은 실내 공기의 질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안위는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라돈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은 고려하지 않고 피폭선량이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적용해왔으나,

○ 이번 침대처럼 호흡기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토론에 의한 피폭을 확인하고,

○ 5월 14일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 위원회”를 개최하여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하였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25. 피고가 2010년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

리스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종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되는바, 위 제품들에 대하여 추가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피고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약 62,088개)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 또한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5,661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연번	모델명	피폭선량(mSv/년)	생산 연도	생산량 (2010년~)
1	그린헬스2	9.35	'10~'14	1,102
2	네오그린헬스	8.69	'10~'15	7,049
3	뉴웨스턴슬리퍼	7.60	'10~'18	14,231
4	모젤	4.45	'15~'18	1,903
5	네오그린슬리퍼	2.18	'10~'15	991
6	웨스턴슬리퍼	1.94	'10~'18	36,416
7	벨라루체	1.59	'15~'18	396
8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6.61	'14~'18	2,321
9	그린슬리퍼	5.84	'10~'14	3,689
10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5.65	'10~'12	2,405
11	파워트윈플러스	3.37	'10~'15	2,159
12	로즈그린슬리퍼	2.84	'10~'14	1,523
13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2.70	'10~'15	6,772
14	(파워그린슬리퍼)라임	2.62	'14~'18	2,933
15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1.90	'14~'18	1,294
16	아이파워그린	2.73	'14~'18	537
17	아르테	3.67	'15~'18	551
18	파워플러스포켓	7.48	'10~'13	599
19	파워그린슬리퍼R	13.74	'14	344
20	그린헬스1	4.06	'10~'11	264
2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1.37	'14~'15	270
합계				87,749

※ (파란색) 5.15일 발표한 기준초과 매트리스 7개 모델
 * 해당 모델명 제품의 경우, 생산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결함 가공제품에 해당
 ** 2차 조사 결과 발표시(5.15) '아이파워포켓슬리퍼'는 최종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로 확인됨

<제도개선>

-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발견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료물

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 또한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 의무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6. 11. 및 2018. 7. 6. 추가로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8종의 속커버나 스펀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하여 위 제품들에 대하여 추가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피고가 2005년경 이후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매트리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연번	모델명	피폭량(mSv/년)	연번	모델명	피폭량(mSv/년)
1	그린헬스2	9.35	16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1.90
2	네오그린헬스	8.69	17	아이파워그린	2.73
3	뉴웨스턴슬리퍼 (05.11. 이후)	7.60	18	아르데	3.67
4	모젤	4.45	19	파워플러스포켓	7.48
5	네오그린슬리퍼	2.18	20	파워그린슬리퍼R	13.74
6	웨스턴슬리퍼 (12.10.1~16.12.31)	1.94	21	그린헬스1	4.06
7	벨라루체	1.59	22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1.37
8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6.61	23	아르데2	2.66
9	그린슬리퍼 (2007. 1. 1. 이후)	5.84	24	폰타나	1.13
10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5.65	25	헤이즐	1.11
11	파워트윈플러스	3.37	26	(A社 특판) 트윈파워	4.92
12	로즈그린슬리퍼	2.84	27	(2010년 이전 단종) 트윈 플러스	2.34
13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2.70	28	(2010년 이전 단종) 예버 그린	1.11
14	(파워그린슬리퍼)라임	2.62	29	(2010년 이전 단종) 헬스 닥터 슬리퍼	2.51
15	(2010년 이전 단종) 파워 콤보	3.31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프리미엄 파워그린슬리퍼'는 '프리미엄그린슬리퍼'의 오기임을 인정함

다. 라돈, 토론의 정의 및 성질 등

1) 라돈(Rn)은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관련 주요 핵종으로 Rn-222와 Rn-220이 있다. Rn-222는 우라늄(U-238)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라돈'이라고 지칭하며 반감기는 3.8일이다. Rn-220은 토륨(Th-232)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토론'이라 지칭하며 반감기는 55.6초이다. 우라늄(U-238)과 토륨(Th-232)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이며 지구상 어디에서나 흔히 존재하고 있다. 라돈의 물리적 특성상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라돈이 쌓여서 축적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도포된 모나자이트 분말에 함유된 우라늄(U-238)은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라돈'으로 변화하고, 토륨(Th-232)은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토론'으로 변화하며, 각 붕괴과정에서 알파선이 방출된다. '라돈'과 '토론'은 붕괴되면서 방사성물질인 딸핵종들로 변화하고, 딸핵종들이 다시 붕괴되어 최종적으로 납(Pb) 등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붕괴과정에서 딸핵종들이 먼지에 붙어 몸에 흡입되어 기관지 세포벽에 침착하고 체내에서 재차 붕괴되면서 알파선을 방출하여 세포 변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신승호에 대한 불기소처분

피고의 대표인 신승호는 2020. 1. 3.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등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 36, 45호증, 을 제6, 7, 13 내지 16, 25, 26, 34 내지 36, 4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 판매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사용함으로써 암, 천식 등의 질병을 얻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판매한 것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임을 전제로 그 판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바, ① 피고에게 침대 교환신청을 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매매대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구체적인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판매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였고,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하여 원고들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건강상태에 이상이 초래되는 등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8. 29.경부터 5년 전인 2013. 8. 29.경 이전에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한 원고들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였고, 위 2018. 8. 29.경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 8. 29.경 이

전에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한 원고들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경과하였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고의·과실과 손해 및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내지 과실 판단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가 된다.

2) 위법성 및 고의 내지 과실의 인정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22, 32, 38, 39, 45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그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하여 원고들에게 판매한 행위가 그 당시 시행되던 관

런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피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생활방사선법은 2011. 7. 25. 법률 제10908호로 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었는바, 이처럼 2012. 7. 26. 이전에는 라돈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중 2012. 7. 26. 이전에 제작된 것들은 관련 법령상 어떠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생활방사선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어 온 생활방사선법 제15조2)에 따르면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등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경우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직접 누출되거나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직접 전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문제될 뿐인데, 당시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특히 2019. 1. 15. 이전에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될 당시에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 중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생활방사선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99호로 개정된 이후에야 라돈 등 천연

2) 생활방사선법(2019. 1. 15. 법률 제1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전이)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방사성핵종이 함유된 물질이 사용된 매트리스의 제조 또는 수출입이 금지되었던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는 모두 2019년 이전에 이미 제작되고 판매된 것들이다),³⁾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제작될 당시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 5. 10. 발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인체 외부 피폭선량 및 내부피폭선량이 모두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그로부터 5일 후인 2018. 5. 15.에는 '인체 내부 피폭선량 측정 기준을 다시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인체 내부 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정반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5. 10.자 발표 당시 연간 피폭선량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산식은 UN산하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2018. 5. 15.자 연간 피폭선량 산정을 위한 산식은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를 토대로 정해진 산식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2018. 5. 15.자 발표자료에서 따라 산정된 연간 피폭선량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5. 15.자 발표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폭선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은 토론인데(라돈은 0.01 ~ 0.76mSv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87호) 제4조는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만,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이하게 섭취 또는 흡입할 수 있는 장난감, 화장품 제품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12호)에 따르면 "별표"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이에는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어느 하나 이상 포함된 것으로서 사람이 눕거나 덮거나 베는 제품, 즉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사람의 신체에 착용, 밀착(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을 포함)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이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는 가공제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이로만 검출되었다), 토론은 라돈에 비해 피폭양이 적고 방호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문제될 당시까지 토론을 규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5. 10.자 발표자료).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도포된 광물가루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생활방사선법상 방사성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모든 가공제품의 제작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인체에 대한 피폭 정도 등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하였던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2014년경 성지베드산업 주식회사⁴⁾에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매트리스의 제작과정을 조사할 당시 매트리스 및 스펀지에서 라돈 및 토론이 거의 측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제품 생산에 매우 소량의 모나자이트만이 첨가되어 개별 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은 자연방사선량 수준으로 측정되므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폭선량은 무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 점, 피고 소속 관리이사인 신광호는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2160호)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작 후 각종 법률상 요구되는 실험이나 시험을 거쳤고,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으로부터 친환경도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대거나 그것이 인체에 유해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제작·판매될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

4)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피고는 성지베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트리스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대법원 판결(98다56997호)⁵⁾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형식적으로 생활방사선법상 안전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매트리스 판매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듯 피고의 이 사건 각 매트리스 판매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하여 원고들이 암, 천식 등의 질병을 얻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라돈 및 토론과 같은 방사성물질은 누구나 일상생활 중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폭이 될 경우에만 신체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과

5)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안(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서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사용함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피폭됨으로써 신체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5. 15.자 발표는 매일 10시간 동안 매트리스 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 매트리스에 바로 접촉하여 엎드린 자세로 매트리스 표면 위 2cm 거리에서 수면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연간 피폭선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면할 때 매트리스 커버를 씌우거나 베개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매트리스에 접촉하는 신체부위와 매트리스 사이의 이격거리가 증가할수록 검출되는 라돈 및 토론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암센터의 촉탁의이자 라돈과 관련된 전문가 백도명은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5081953호)에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입한 후에 매트리스 비닐커버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라돈 및 토론이 비닐커버를 뚫고 외부로 검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침대 사용자의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5. 15.자 발표결과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트리스가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건강상태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인체를 피폭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현재 라돈이 폐암 외에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고 박두원(폐렴), 원고 유민서(폐질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폐암과 관련이 없는 질병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매트릭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폐암과 무관한 질병을 입게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 박두원, 원고 유민서의 경우에도 폐암에 걸린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질환들을 폐암의 초기 단계 질환으로 보더라도 폐암 역시 발병원인이 명확한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발병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 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며, 일상생활 중 라돈에 노출되는 상황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위촉한 라돈 전문위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장기간 라돈에 피폭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실내 라돈 농도 및 개인별 흡연 여부 등 외적 변수를 배제하고 매트릭스 사용에 기인한 라돈 피폭선량만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매트릭스에서 발생한 라돈에 의한 피폭으로 인한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2019. 11. 26. 개최된 라돈 침대 사건 전문가 자문회의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위원들이 '이 사건 각 매트릭스에서 검출된 라돈과 소비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고 이 사건 각 매트릭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트릭스 사용과 위 원고들이 입게 된 질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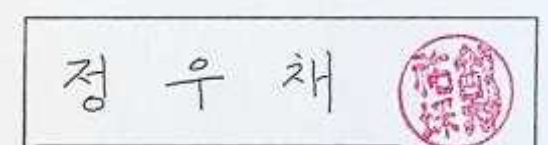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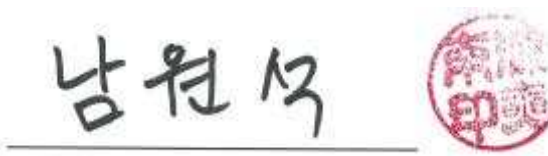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매트리스 제조·판매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원고들에게 판매한 것이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혜	
	판사	정우채	
	판사	남원석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단위: 원)

순번	이름	질병명	매트리스 매매대금 (A)	위자료 (B)	청구금액 (= A + B)
1	강천수		1,100,000	1,500,000	2,600,000
2	조은숙	유방암, 갑상선암	1,100,000	1,500,000	2,600,000
3	김기수	갑상선암	500,000	1,500,000	2,000,000
4	정하순		500,000	1,500,000	2,000,000
5	김성미	목아픔과 잦은 기침	2,600,000	1,500,000	4,100,000
6	번영식	목아픔과 잦은 기침	2,600,000	1,500,000	4,100,000
7	김은영		4,771,200 (= 뉴웨스턴 슬리퍼 671,200 + 에버그린 3,000,000 + 파워그린슬리퍼라임 1,100,000)	4,500,000	9,271,200
8	김하나	눈가, 두피 피부염	1,900,000	1,500,000	3,400,000
9	차기용	알러지 비염	1,900,000	1,500,000	3,400,000
10	차승혁	아토피 피부염	1,900,000	1,500,000	3,400,000
11	김학인		500,000	1,500,000	2,000,000
12	이수미		500,000	1,500,000	2,000,000
13	김지훈		500,000	1,500,000	2,000,000
14	김도훈		500,000	1,500,000	2,000,000
15	노승민		338,400	1,500,000	1,838,400

순번	이름	질병명	매트리스 매매대금 (A)	위자료 (B)	청구금액 (= A + B)
16	류근식		800,000	1,500,000	2,300,000
17	박향숙	유방암 수술(2013년)	800,000	1,500,000	2,300,000
18	박두원	천식, 알러지비염, 폐렴	999,000	1,500,000	2,499,000
19	장세진		999,000	1,500,000	2,499,000
20	박지성		999,000	1,500,000	2,499,000
21	박가윤	급성 기관지염	999,000	1,500,000	2,499,000
22	박상국		999,000	1,500,000	2,499,000
23	서정란	갑상선암 수술(2015년)	1,100,000	1,500,000	2,600,000
24	정재권		1,100,000	1,500,000	2,600,000
25	정아영		800,000	1,500,000	2,300,000
26	서정인		2,300,000	1,500,000	3,800,000
27	강영미		2,300,000	1,500,000	3,800,000
28	서주혜		884,200	1,500,000	2,384,200
29	서지혜		1,010,400	1,500,000	2,510,400
30	성국현	갑상선 우측 물혹 5cm 우측 침샘 농 발생해서 항생제 투입 입원치료 남성기능 저하	3,100,000(= 파워트윈플러스 2,400,000 + 그린슬리퍼 700,000)	3,000,000	6,100,000
31	신말숙	갑상선전절제술	2,400,000	1,500,000	3,900,000
32	정병석		2,400,000	1,500,000	3,900,000

순번	이름	질병명	매트리스 매매대금 (A)	위자료 (B)	청구금액 (= A + B)
33	안상준		900,000	1,500,000	2,400,000
34	김보람		900,000	1,500,000	2,400,000
35	안진유		900,000	1,500,000	2,400,000
36	유금자	천식	1,874,000	3,000,000	4,874,000
37	유정희		2,000,000	1,500,000	3,500,000
38	이경호	간암 수술(2012년 4월)	2,000,000	1,500,000	3,500,000
39	이은영		400,000	1,500,000	1,900,000
40	이점행		2,000,000	1,500,000	3,500,000
41	주은미		2,000,000	1,500,000	3,500,000
42	이혜원		1,200,000	1,500,000	2,700,000
43	이정승		3,000,000	1,500,000	4,500,000
44	이주희		3,000,000	1,500,000	4,500,000
45	이지혜	자궁근종	500,000	1,500,000	2,000,000
46	전병규		500,000	1,500,000	2,000,000
47	정영숙		2,500,000	1,500,000	4,000,000
48	채수인		1,100,000	1,500,000	2,600,000

순번	이름	질병명	매트리스 매매대금 (A)	위자료 (B)	청구금액 (= A + B)
49	장세원		1,100,000	1,500,000	2,600,000
50	채민주	비염, 아토피	1,100,000	1,500,000	2,600,000
51	채영인		1,100,000	1,500,000	2,600,000
52	최경환		1,000,000	1,500,000	2,500,000
53	이점향		1,000,000	1,500,000	2,500,000
54	최희재		700,000	1,500,000	2,200,000
55	최혜진	지주막하출혈	2,300,000	1,500,000	3,800,000
56	홍종희	식욕부진(병원치료), 목과 허리 수술	700,000	1,500,000	2,200,000
57	최경희	식욕부진(병원치료)	700,000	1,500,000	2,200,000
58	황영상		860,000	1,500,000	2,360,000
59	장희연		860,000	1,500,000	2,360,000
60	황지영		400,000	1,500,000	1,900,000
61	황지혜		400,000	1,500,000	1,900,000
62	김은경		1,000,000	1,500,000	2,500,000
63	양수현		1,000,000	1,500,000	2,500,000
64	양성기		1,000,000	1,500,000	2,500,000
65	채병석		3,000,000	3,000,000	6,000,000
66	이인선	심장 판막수술(2013년 4월) B형 간염 치료(2016년) 기관지 질병(2015년 8월) 체력 저하 및 만성 피로	3,000,000	3,000,000	6,000,000
67	강병구		-	1,500,000	1,500,000

순번	이름	질병명	매트리스 매매대금 (A)	위자료 (B)	청구금액 (= A + B)
68	이인영		-	1,500,000	1,500,000
69	강나연		700,000	1,500,000	2,200,000
70	유민서	폐질환(2014년) 배체트병	1,000,000	1,500,000	2,500,000
71	김재자		-	2,140,000	2,140,000
72	정누리		-	1,920,000	1,920,000
73	정재민		-	1,920,000	1,920,000
74	김유훈		650,000	1,500,000	2,150,000
75	신선영		500,000	1,500,000	1,500,000 ⁶⁾
합계			216,923,200		

6) 2,00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